



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

제정일	2013. 8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- 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·학습·시설·설비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“다문화가족 학생” 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- 제 3조 (구성)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본교 학생처 내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
- 제 4 조 (지원 및 기능) 다문화가족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①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② 다문화가족 학생 학습, 상담, 시설 등의 대학생활 지원
 - ③ 다문화가족 학생 도우미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
 - ④ 다문화의 이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 - ⑤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
- 제 5조 (지원업무 담당자 교육)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업무 담당자는 다문화 가족 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 6조 (장학금 지급)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 7조 (회의)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 8조 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반 규정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관계 법령에 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